학칙 시행규칙(대학원)

(최종개정일 2023.10.1.)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시행규칙은 명지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있어 대학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변경 2005.8.1.)
- 제2조(과정) ①대학원에 석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과 박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이하 "박사과정"이라 한다) 및 석사박사과정이 통합된 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을 둔다.(변경 2005.3.1)
 - ②대학원에 학위과정으로 외부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협정에 의한 학·연·산 협동과정과 학과간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변경 2012.10.1.)
- 제3조(전공) ①각 학과(부)에는 1개 이상의 전공을 둔다.
 - ②동일 학과(부) 내에서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전공을 변경할 수 있다.

제 2 장 학사운영 제 1 절 신입학

- 제4조(입학자격)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항번 호 삭제 2008.12.1)
 - 1.석사과정
 - 가.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취득 예정자
 - 나.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2.박사과정
 - 가.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취득 예정자
 - 나.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3.통합과정 : 제4조제1호를 적용한다.(신설 2005.3.1)
 - ②(변경 2005.3.1, 2005.8.1, 삭제 2008.12.1.)
- **제5조(정원외 입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원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변경 2010.1.1)
 - 1.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변경 2013.8.1.)
 - 2.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 3.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 제6조(지원절차) 입학(편입학 포함)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기간 내에 입학원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제출한 서류와 납부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

니하다.

제7조(입학전형) ①입학전형은 정시전형과 수시전형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입학전형은 서류심사, 전공구술시험, 면접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형에 응할 수 없는 외국인 학생은 서류심사만으로 전형할 수 있다.(변경 2007.6.1.)

제8조(입학허가) ①입학(편입학 포함)은 대학원장의 상신에 의하여 총장이 이를 허가한다. ②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기간 내에 등록금(입학금 포함)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2 절 편입학

제9조(편입학 인원·자격) ①편입학은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모집할 수 있다 ②각 학위과정의 편입학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학위과정	떠이하다	전적대학원					
	편입학기	등록학기	이수학점				
정치	2	1학기 이상	6학점 이상				
석사	3	2학기 이상	12학점 이상				
	2	1학기 이상	6학점 이상				
박사	3	2학기 이상	12학점 이상				
	4	3학기 이상	18학점 이상				

제10조(편입학 전형) 편입학 전형은 제7조의 신입학 전형에 준하여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 3 절 재입학

제11조(재입학의 허가) 재입학은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매 학기초 등록기간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12조(재입학의 불허) 퇴학 또는 제적된 자는 제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입학할 수 없다.

- 제13조(재입학의 절차) ①재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기간 내에 재입학원서와 관련서류를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재입학은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 대학원장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이를 허가한다.(변경 2010.1.1)
 - ③재입학 지원자가 여석을 초과할 경우에는 제적 전의 학업성적 순으로 허가한다.
 - ④재입학자는 등록금 이외에 소정의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4 절 휴학 및 복학

제14조(휴학) ①재학 중 질병, 의무군복무, 모성보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변경 2014.3.1.)

②학기 중에 휴학할 경우 수업일수가 5분의 4미만일 때에는 당해학기의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입대의 경우는 3분의 2미만으로 한다.(변경 2007.6.1.)

제15조(휴학의 종류) 휴학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일반 휴학 : 질병, 사고, 가정 사정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2.군입대 휴학 : 교육소집 또는 입영통지서를 받고 군에 입대하는 경우

3.모성보호휴학 : 임신, 출산,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제16조(휴학절차) ①일반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4주 이상의 질병 또는 사고로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군입대 휴학자는 입영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군입대휴학원을 제출하여 야 하며, 일반휴학 중에 입대할 경우에는 다시 군입대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모성보호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진단서,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일)를 첨부하여 모성보호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4.3.1.)

제17조(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소정기간 내에 복학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군입대 휴학일 경우 학기 초 4주 이내의 전역 예정자에게는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 5 절 등록 및 수강신청

제18조(등록) ①학생은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지정장소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석사과정은 4학기 이상, 박사과정은 6학기 이상, 통합과정은 8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한다. (변경 2007.11.1., 2021.3.1.)

1.(삭제 2021.3.1)

2.(삭제 2021.3.1)

3.(삭제 2004.9.1)

4.(삭제 2021.3.1.)

- **제18조의2(등록금 반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신설 2007.6.1, 변경 2011.3.1)
 - 1.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2.입학을 허가받은 자가 입학 포기의사를 표시한 경우
 - 3.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사를 표시한 경우
 - 4.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변경 2011.3.1)

5.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변경 2011.3.1.)

제18조의3(등록금 반환기준) (신설2007.6.1) ①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변경 2011.3.1)

②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 등록금은 다음에 의하여 반환한다.(변경 2011.3.1)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 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 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제19조(수업연한 초과자의 등록)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이 학기당 수 강학점 수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4학점 이상 : 등록금 전액(변경 2004.9.1)

2.1학점 이상 3학점 이하 : 등록금의 2분의 1(변경 2004.9.1. 2007.3.23)

3.(삭제 2004.9.1.)

제20조(연구등록) ①각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가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논문지도과목 이수, 학위 논문 작성 등 졸업요건을 갖추기 위해 학생의 신분을 유지하려면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신 설 2007.11.1)

②연구등록금은 논문지도학기에는 당해 학년도 등록금의 100분의 2를 납부하고 학위청구논문 심사학기에는 당해 학년도 등록금의 10분의 1을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07.11.1., 변경 2016.3.1.)

제21조(수강신청) 학생은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수강신청 기준학점) 매 학기 수강신청 기준학점은 9학점 이내로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 수강신청 기준학점은 12학점 이내로 한다.(변경 2022.4.1.)

- 1.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4.0 이상인 자
- 2. 학과 요청에 의하여 총장이 이를 허가한 학과

제23조(수강신청 변경·포기) 수강신청과목의 변경은 불허한다. 다만, 수강신청과목의 폐강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 변경 또는 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재수강) ①학점을 취득한 교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다.

②재수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강신청 전에 재수강신청서를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절 학적부 및 제 증명

제25조(학적부 기재사항) ①학적부에는 학생의 인적사항, 학적변동, 상벌, 성적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②학적부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원을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6조(보관·보존) ①학적부는 재학생의 경우에는 입학년도별, 학과(부)별로, 졸업생의 경우에는 졸업년도별, 학과(부)별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②학적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27조(제 증명서 발급) ①제 증명서는 다음과 같이 발급한다.(변경 2008.12.1)

1.학위수여증명서 : 학위를 수여받은 자

2.학위수여예정증명서 : 수료 또는 수료예정자로 당해학기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예정인 자

3.수료증명서 : 수료에 필요한 학점과 성적을 취득한 자

4.수료예정증명서 : 당해학기에 수료에 필요한 학점과 성적을 취득예정인 자

5.재학증명서 : 현재 재학하고 있는 자

6.재적증명서 : 우리 대학원에 재적한 사실이 있는 자

7.휴학증명서 : 휴학 중인 자

8.성적증명서

9.기타 제 증명서

②제 증명서는 영문으로 발급할 수 있다.

제 3 장 교육과정 제 1 절 교과과정 및 학점취득

제28조(교과과정 편성) 대학원 교과과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이를 확정한다.

제29조(교과과정 구성·최소이수학점) ①교과과정은 전공과목과 논문지도과목으로 구분한다.

②졸업에 필요한 전공과목의 최소이수학점은 석사과정 24학점, 박사과정 36학점, 통합과정 60학점으로 한다. 다만, 학과(부)는 12학점 이내에서 공통(필수, 선택)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변경 2005.3.1)

③(삭제 2005.3.1.)

제30조(교과목의 학점단위) 대학원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의 학점단위는 3학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2학점으로 할 수 있다.

- 제31조(교과목의 개설·변경) ①전공과목은 주임교수가 학과(부)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 장의 승인을 얻어 개설한다.
 - ②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전공과목을 공동으로 개설할 수 있다.
 - ③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임교수가 학과(부)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교과목의 강좌를 개설하기 전에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32조(논문지도과목)** ①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논문연구를 위하여 논문지도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다.
 - ②논문지도과목은 석사과정은 2P 이상, 박사과정은 4P 이상, 통합과정은 6P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수강신청 기준학점과 졸업이수학점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박사과정 편입학생의 경우는 3P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변경 2004.3.1)
 - ③논문지도과목의 담당교수는 지도교수로 하고, 이수여부는 합격(P) 또는 불합격(N)으로 평가한다.
- 제33조(추가이수과목) ①학사과정의 전공학과(부)와 다른 학과(부)의 석사과정에 입학한 자는 학과(부)가 지정하는 12학점 이내의 학사과정 또는 석사과정 교과목을 석사과정의 이수학점에 추가로 이수하도록 부과할 수 있다. (변경 2004.9.1, 2007.6.1)
 - ②석사과정의 전공학과(부)와 다른 학과(부)의 박사과정에 입학한 자는 학과(부)가 지정하는 12학점 이내의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 교과목을 박사과정의 이수학점에 추가로 이수하도록 부과할 수 있다. (변경 2004.9.1, 2007.6.1)
 - ③추가이수과목은 학생이 입학하기 전에 해당학과(전공) 주임교수가 이를 정하며, 학사과정 또는 석사과정에서 추가이수과목과 동일한 과목이나 유사한 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추 가이수학점을 감할 수 있다.
 - ④추가이수과목은 학칙 제32조의 학기당 취득학점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제34조(강좌 개설) 주임교수는 편성된 교과과정 중에서 매 학기 개설할 교과목을 학과(부) 교수회의를 거쳐 선정하고, 이를 개강 전에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학문 성격이유사한 학과(부)간에 공동으로 개설한 교과목은 개설 과목 수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제35조(타 학과(부) 교과목의 수강)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 타 학과(부)의 교과목을 석사과정은 12학점 이내, 박사과정은 15학점 이내, 통합과정은 21학점 이내에서 전공 선택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다. 다만, 학문 성격이 유사한 학과(부)간에 공동으로 개설한 교과목은 전공학과(부)의 교과목으로 인정한다.(변경 2023.3.1., 2023.10.1.,)
- 제36조(학사과정 학생의 대학원 교과목 수강) 학사과정에서 최소졸업학점의 1/2 이상을 취득하고 대학원 교과목을 수강하기 직전 2개 정규학기의 평균평점이 3.50 이상인 학사과정의 학생은 대학원 주임교수와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한 학기에 6학점 이내에서 대학원 교과목을 수 강할 수 있으며, 취득학점은 석사과정에 입학할 경우 6학점까지 석사과정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변경 2012.3.1., 2013.3.1.)

- **제36조의2(학사과정 학생의 대학원 인정교과목 수강)** 학사과정에서 대학원이 인정하는 교과목을 수강한 경우에는 6학점까지 석사과정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04.3.1.)
- 제37조(석사과정 학생의 학사과정 교과목 이수) 석사과정의 학생이 학사과정에서 이수하지 않은 전공심화과목을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 이수할 수 있으며, 이를 9학점까지 석사과정의 전공 선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변경 2023.3.1.)
- 제38조(학점인정) 각 교과목의 성적이 등급 CO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학점으로 인정한다.
- 제39조(타 대학원의 학점인정) ①교내 및 국·내외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우리 대학원의 교 과과정과 일치하는 교과목에 한하여 석사과정 12학점 이내, 박사과정 15학점 이내에서 인정 할 수 있다.(변경 2023.3.1.)
 - ②제1항의 학점인정은 해당학과(부)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우리 대학교 특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교과과정의 경우 심의 및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변경 2023.3.1.)
 - ③우리 대학원과 학점교환제를 시행하고 있는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협약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40조(편입학생의 학점인정) 편입학생의 전적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해당학과의 교과과정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에 한하여 학기당 6학점 범위 내에서 주임교수의 학점인정 심의와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석사과정 12학점 이내, 박사과정 18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변경 2010.1.1.)
- 제40조의2(전과학생의 학점인정) 전과학생의 학점인정은 전출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전입학과 의 교과과정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에 한하여 학기당 6학점 범위 내에서 학과 주임교수의 학점인정 심의와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학과통합 또는 학과 내에서 전공이 변경된 자는 종전의 취득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04.9.1., 2010.1.1.)
- 제40조3(외국어강의 운영) 전공 교과목 중 외국어로 진행하는 강의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조신설 2019.9.1.]

제 2 절 부전공

- 제41조(이수범위) ①부전공은 동일 또는 관련 학문계열 내에서 소속 학과(부)가 아닌 타 학과 (부)의 전공을 임의로 선정하여 부전공을 이수하여야 한다.(변경 2020.7.1.)
 - ②융합전공은 소속 학과(부)의 전공 및 2개 이상의 학과(부) 등이 융합하여 개설한 전공을 이수하여야 한다.(신설 2020.7.1.)
- 제42조(신청자격) ①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부전공 이수를 신청하기 직전학기까지의 성적이 평균평점 4.0 이상이어야 한다.

②융합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융합전공별 주관학과에 입학한 학생에 한하며, 입학한 당해 학기부터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20.7.1.)

- 제43조(이수절차) ①부전공은 석사과정의 경우 2학기부터, 박사과정의 경우 3학기부터, 통합과정의 경우 4학기부터 이수할 수 있으며, 융합전공은 석사,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각 1학기부터 이수할 수 있다.(변경 2020.7.1., 2023.10.1.)
 - ②부전공 또는 융합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수강신청기간 내에 지도교수와 소속 주임교수 및 부전공 주임교수(부전공자에 한함)의 허락을 받아 부전공 또는 융합전공 이수신청서를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변경 2020.7.1.)
- 제44조(이수학점) ①부전공 이수학점은 석사과정의 경우 6학점 이상, 박사과정의 경우 9학점 이상, 통합과정의 경우 12학점 이상으로 한다.(변경 2023.10.1.)
 - ②융합전공 이수학점은 (별표1)과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신설 2020.7.1.)
 - ③부전공으로 이수한 학점은 각 학위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소이수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 다.(항번호 변경 2020.7.1.)
- 제45조(이수과목) ①부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부전공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부전공 학과(부)에서 소정의 부전공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②융합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소정의 융합전공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신설 2020.7.1.)
- 제46조(부전공·융합전공 인정) (조명 변경 2020.7.1.)부전공 또는 융합전공 이수를 인정받으려면 이수한 부전공 또는 융합전공 교과목의 성적이 평균평점 3.5 이상이어야 한다. (변경 2020.7.1.)
- 제47조(이수 취소) ①부전공 또는 융합전공 이수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도교수와 소속 주임교수 및 부전공 주임교수(부전공에 한함)의 허락을 받아 부전공 또는 융합전공 이수 취소 신청서를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변경 2020.7.1.)
 - ②전항의 경우에 부전공으로 이수한 학점은 소속 학과(부)의 전공 선택과목으로 석사과정의 경우 6학점 이내, 박사과정의 경우 9학점 이내, 통합과정의 경우 12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으며, 융합전공으로 이수한 학점은 소속학과(부)의 전공 선택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변경 2020.7.1., 2023.10.1.)

제 3 절 시험 및 성적

- 제48조(시험) 시험은 매 학기 수시시험과 학기말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49조(성적평가표 제출) 각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기말시험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학기 성적을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입력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교과목 담당교수는 사전에 대학원장과 협의하여 학사업무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

다.(변경 2007.6.1.)

- 제50조(성적표시) 각 교과목의 성적은 등급으로 표시하고, 평균성적은 가중평균치법을 사용한 평점으로 표시한다. 다만, 추가이수 교과목 및 논문지도과목의 평가 성적이 Co 이상은 P로, D+ 이하는 N으로 표시한다.(변경 2007.6.1.)
- 제51조(평균성적의 산출) 평균성적은 각 교과목의 학점수와 평점을 곱한 평점합계를 신청학점 합계로 나누어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 제52조(성적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성적은 취소한다.
 - 1.무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의 당해학기 성적
 - 2.시험 중 부정행위자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당해학기 성적 또는 해당과목 성적
 - 3.수강신청서 미 제출자의 성적
 - 4.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교과목의 성적
 - 5.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성적
- 제53조(성적의 정정) 제출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 다만, 학생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담당교수 가 성적 이의신청에 의하여 성적정정을 요청할 경우 대학원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제54조(성적의 이의신청)** ①매 학기말에 제출되는 성적평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정기간 내에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이의신청은 담당교수가 성적 정정원을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한다.
 - ③대학원장은 이의신청된 성적을 심사하여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이를 정정할 수 있다.

제 4 절 수 료

제55조(수료학점·성적) ①각 학위과정의 학기수료에 필요한 최소이수학점은 다음과 같다.

1.석사과정

가.1학기 : 6학점

나.2학기 : 12학점

다.3학기 : 18학점

라.4학기 : 24학점

2.박사과정

가.1학기 : 6학점

나.2학기 : 12학점

다.3학기 : 18학점

라.4학기 : 24학점

마.5학기 : 30학점

바.6학기 : 36학점

3.통합과정(신설2003.3.1)

가.1학기 : 6학점 나.2학기 : 12학점 다.3학기 : 18학점 라.4학기 : 24학점 마.5학기 : 33학점 바.6학기 : 42학점 사.7학기 : 51학점

아.8학기 : 60학점

②수료성적은 평균평점 3.0이상으로 한다.

제55조의 2(통합과정의 박사과정 인정) (신설 2005.3.1, 삭제 2010.1.1.)

제55조의 3(통합과정 탈락자 등에 대한 조치) (신설 2005.3.1) ①통합과정의 탈락자 및 중도포기 자에 대하여는 학칙시행규칙(대학원) 제73조 제1항의 학위수여 자격을 갖춘 자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하고, 통합과정 이수를 종결시킬 수 있다.(변경 2005.8.1)

②통합과정 탈락자 및 중도포기자로 발생한 여석은 박사과정 여석으로 인정한다.

③제2항의 여석은 석사과정 중 통합과정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자로 충원할 수 있다.(신설 2012.10.1.)

제 5 절 주임교수·지도교수 및 논문지도위원회

제56조(주임교수의 직무) 주임교수는 해당학과(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교과목 개설 및 변경, 강좌개설, 지도교수 제청, 기타 각종 학사업무를 관장한다.

제57조(주임교수의 임명) 주임교수는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로 하며,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사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학과(부)와 전공이 일치하는 학과(부) 주임교수는 학사과정의 학과(전공) 주임교수가 그 업무를 담당한다.

제58조(지도교수의 직무) 지도교수는 해당 학생의 수강신청을 포함하여 학사 및 학업을 지도하고 논문연구와 실험 및 학위논문의 작성을 지도한다.

제59조(지도교수의 자격) ①석사과정 학생의 지도교수는 전공분야가 동일한 우리 대학교 일반교 원 중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교원 중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전문분야의 탁월 한 업적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는 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변경 2008.6.1., 2012.7.1., 2015.7.1., 2017.3.1)

②박사과정 학생의 지도교수는 전공분야가 동일한 우리 대학교 일반교원 중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교원 중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전문분야의 탁월한 업적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는 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단서신설 2004.3.1., 변경 2008.6.1., 2012.7.1., 2015.7.1., 2017.3.1)

- ③석좌교수, 명예교수, 초빙교수로 임용된 우리 대학교 퇴직 전임교원 중 대학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은 자는 재직 당시 지도학생을 학위 취득 시 까지 계속하여 지도할 수 있다.(신설 2013.10.1.)
- ④공동 지도교수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우리 대학교 비전임교원, 타 대학(원) 조교수 이상 또는 교외의 선임연구원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60조(지도교수의 위촉)** ①각 학위과정 학생의 지도교수는 학생의 입학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임교수의 제청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 ②전공학문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대학원장은 주임교수의 제청에 의하여 공동지도교수 를 위촉할 수 있다.
- 제61조(지도교수의 변경) ①지도교수의 질병, 장기 국외출장, 휴직 등의 사유로 학생지도가 어려울 경우에는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변경 2004.9.1)
 - ②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임교수가 신·구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지도교수 변경 원을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도교수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 원장이 결정한다.
- 제62조(논문지도위원회 구성) ①학생의 논문지도를 목적으로 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논문지도위원회(이하 "지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 ②지도위원의 자격은 지도교수의 자격에 준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1인의 타 대학(원) 전임교원을 위촉할 수 있다.
 - ③지도위원은 석사과정 3학기, 박사과정 4학기, 통합과정 6학기에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제청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변경 2023.10.1.)
- 제63조(지도위원회의 기능) 지도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학생의 논문연구, 논문계획서 및 논문작성에 대한 지도 및 심사에 관한 사항
 - 2.학생의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3.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심사에 관한 사항
- 제64조(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①학위청구논문의 연구와 지도를 위하여 학위청구논문 심사 1 개학기 전까지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공개발표를 통하여 지도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변경 2021.3.1.)
 - ②지도위원회는 담당학생의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를 심사하여 수정·보완하게 하고, 심사를 마친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를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한다.
 - ③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된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를 지도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절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 **제65조(외국어시험)** ①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전공분야의 연구에 필요한 외국어시험에 합격하여 야 한다.
 - ②외국어시험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다만, 예체능계열은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변경 2007.11.1)
- **제66조(외국어시험의 응시자격)** 학위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자는 외국어시험의 응시 자격을 갖는 다.(변경 2005.3.1., 2007.6.1)
- 제67조(외국어시험과목) ①각 학위과정의 외국어시험과목은 영어로 한다. 다만, 박사과정은 학과 에 따라 제2외국어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변경 2008.12.1)
 - ②공인된 영어능력 검정시험(TOEFL, TOEIC, TEPS 등)에서 계열에 따라 일정한 성적을 취득한 자와 대학원에서 인정하는 외국어 강좌를 수강하고 소정의 합격판정(P)을 받은 자는 영어시험을 면제한다.(변경 2005.8.1, 2007.6.1, 2008.12.1)
 - ③모국어가 영어인 외국인 학생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어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변경 2007.11.1)
 - 1.대학원에서 인정하는 한국어 과목을 수강하고, 소정의 합격판정(P)을 받은 자
 - 2.대학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어 시험에서 대학원장이 정한 성적 이상을 취득한 자
- 제68조(종합시험) ①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학위청구논문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전공분야의 종합적인 지식의 습득정도를 평가하는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②종합시험은 각 교과목에 대하여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 제69조(종합시험의 응시자격) 각 학위과정의 수료를 위한 최소이수학점 이상을 취득하는 학기부터 종합시험의 응시자격을 갖는다.(변경 2007.11.1.)
- 제70조(종합시험의 시험과목) 종합시험과목은 전공과목 중에서 석사과정 2개 과목, 박사과정 4개 과목, 통합과정 4개 과목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변경 2005.3.1.)
- 제71조(시험의 시기) 외국어시험은 3월과 9월에 실시하고, 종합시험은 4월과 10월에 실시한다.

제 4 장 학위청구논문 제출 및 심사 제 1 절 학위청구논문 체제

- 제72조(논문체제 등) ①학위청구논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갖추어져야 한다.
 - 1.표제지 : 소정의 규격
 - 2.인준서
 - 3.목차
 - 4.표목차 및 그림목차 : 필요시
 - 5.본문
 - 6.참고문헌
 - 7.부록 : 필요시

- 8.논문초록
- ②학위청구논문의 규격, 서식, 분량 등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 ③학위청구논문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어 관련 전공자는 해당 전공언어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모든 논문은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변 경 2009.7.1)

제 2 절 학위청구논문 제출

- 제73조(논문 제출자격) ①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다.
 - 1.3학기 이상 등록하고, 석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소이수학점을 취득하였거나 당해학기에 취득예정인 자
 - 2.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3.논문지도과목을 2P 이상 이수한 자(변경 2004.3.1)
 - 4.연구윤리 강의를 수강한 자(신설 2016.5.1.)
 - ②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 1.5학기 이상 등록하고, 박사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최소이수학점을 취득하였거나 당해학기에 취득예정인 자
 - 2.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3.논문지도과목을 4P 이상 이수한 자(변경 2004.3.1.)
 - 4.연구윤리 강의를 수강한 자(신설 2016.5.1.)
 - ③통합과정의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신설 2005.3.1)
 - 1.6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통합과정수료에 필요한 최소이수학점을 취득하였거나 당해학기에 취득예정인 자(변경 2007.6.1)
 - 2.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3.논문지도과목을 6P 이상 이수한 자
 - 4.연구윤리 강의를 수강한 자(신설 2016.5.1.)
- 제74조(논문 제출시기) 석·박사과정은 4월과 10월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한다.(변경 2007.6.1.)
- 제75조(논문 제출부수·절차) 학위청구논문 제출 승인서와 연구윤리준수확인서를 첨부하여 학위 청구논문 5부를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고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변경 2005.3.1., 2008.12.1., 2014.10.1., 2015.11.1.)
- 제75조의2(논문제출 시한) (신설 2008.6.1) ①석사학위과정은 입학일로부터 6년 이내,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10년 이내 학위논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논문제출시한이경과된 자는 1회에 한하여 논문제출 시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학기부터 석사학위과정은 3년 이내,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5년 이내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있다. 이때 외국어시험, 종합시험에 재응시하여 합격해야 한다.(변경 2021.10.1.)

②병역의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논문제출 시한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제76조 (조 삭제 2007.6.1)

제 3 절 학위청구논문 심사

- 제77조(논문심사위원의 자격·위촉) ①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위원은 제59조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전임교원으로 하며, 주임교수가 추천한 심사위원 중에서 대학원장이 3인(학·연·산 협동 과정은 공동지도교수를 포함하여 4인)을 위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인에 한하여 교외에서 위촉할 수 있다.(변경 2007.6.1, 2008.6.1)
 - ②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위원은 제59조 제2항의 자격을 갖춘 교내·외 대학교의 전임교원 또는 학계의 권위자와 연구기관 선임연구원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주임교수가 추천한 심사위원 중에서 대학원장이 5인(원칙적으로 교내 3인과 교외 2인)을 위촉한다.(변경 2007.6.1., 2008.6.1)
- 제78조(논문심사위원장) 대학원장은 논문심사위원 중에서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지정하거나 위원의 호선으로 심사위원장을 선정하게 하여 논문심사의 진행을 주재하게 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사에 있어서 위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 제79조(논문심사위원의 교체금지) 논문심사를 개시한 이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질병, 출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 제80조(논문심사) ①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는 1차로 논문내용의 타당성과 적격성을 심사하여 논문을 수정·보완하게 하며, 2차로 논문내용의 공개발표를 통하여 공개구술시험을 실시한다. ②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는 3차 이상으로 하되, 1차로 논문내용의 타당성과 적격성을 심사하고, 2차로 논문내용의 발표를 통하여 논문을 수정·보완하게 하며, 3차로 논문요지의 공개발표를 통하여 공개구술시험을 실시한다.
- 제81조(논문심사자료의 제출) 심사위원이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논문 제출자에게 인용한 문헌이나 그 번역본, 참고 될 논문, 도형, 표본, 기타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82조(심사위원의 정족수) 학위청구논문은 심사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는 부득이한 경우 지도교수를 포함한 재적위원 5분의 4 이상의 출 석으로 심사할 수 있다. (변경 2015.7.1.)
- 제83조(논문심사 기간·기간연장) 석사학위와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공개구술시험 포함)는 개시일로부터 각각 1개월과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학위청구논문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내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84조(논문심사의 판정) 학위청구논문과 공개구술시험에 대한 심사위원의 개별 성적은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석사학위 청구논문은 심사위원 2인 이상(학·연·산 협동과 정은 3인 이상), 박사학위 청구논문은 심사위원 4인 이상의 찬성으로 심사통과를 판정한다.
- 제85조(논문심사의 결과보고) 석사학위 청구논문과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위원장은 지정된 기일까지 논문심사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6조(학위수여의 확정) 대학원위원회는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의 수여여부를 결정하고, 대학원장은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 학위수여를 확정한다.(변경 2008.12.1.)
- 제87조(학위논문 제출) ①학위수여 확정자는 학위청구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수정·보완하고, 대학원의 소정규격에 따라 제본한 학위논문 4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중 3부는 심사위원 전원의 날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변경 2007.6.1., 2014.10.1., 2021.3.1.) ②학위논문은 논문심사 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장 졸 업 제 1 절 석·박사학위 수여

- 제88조(학위수여) 석사과정, 박사과정 또는 통합과정을 수료하고, 학위청구논문 심사와 공개구술 시험에 합격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자에게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석사과정의 경우 학과가 선택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이 정한 방법으로 학위논문을 대신할 수 있다. (변경 2005.3.1., 2008.12.1., 2017.11.1., 2023.3.1.)
- **제89조(학위기)** 석사학위기와 박사학위기는 각각 별지 제1호 서식, 제2호 서식 및 제2-1호 서식 과 같다.(변경 2008.12.1.)
- 제89조의 2(조기졸업)[본조신설 2022.4.1.]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은 학칙 제11조 제4항에 명시한 수업연한 단축기간 범위안에서 조기졸업 할 수 있다. 단, 외국인 대상 특정학과 또는 전공을 제외한 학과의 경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에 한한다.

제 2 절 명예박사학위 수여

- 제90조(학위수여) ①학술과 문화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또는 인류문화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②명예박사학위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수여한다.
- 제91조(학위종별) 우리 대학교에서 수여하는 명예박사학위의 종별은 학칙 제53조 제2호의 박사

학위 종별에 따라 이를 받을 자의 공헌 또는 공적을 고려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2조(학위기) 명예박사학위기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제 6 장 연구과정

제93조(연구과정) 대학원에 수업년한을 1년으로 하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제94조(입학자격) 연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4년제 대학 졸업자
- 2.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제95조(수료중) (조명변경 2008.12.1) 연구과정에서 연구 과목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연구과목에 대한 수료증을 별지 제4호 서식과 같이 교부할 수 있다.(변경 2008.12.1)

제 7 장 운영위원회

제96조(구성) ①대학원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한다.
- ③위원은 당연직으로 단과대학장, 기획조정실장, 대학원 교학처장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총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약간 명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변경 2006.1.5., 2007.7.1)

제97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변경 2007.9.1)

- 1.장학생 선정에 관한 사항
- 2.시간강사 위촉에 관한 사항
- 3.학생 상벌에 관한 사항
- 4.대학원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 5.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
- 6.(삭제 2007.9.1)
- 7.(삭제 2007.9.1)
- 8.(삭제 2007.9.1)
- 9.(삭제 2007.9.1.)
- 제98조(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 제99조(준용) 이 시행규칙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은 학칙 및 학칙시행규칙(학사과정)을 준용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시행세칙 제18조 제2항은 2004학년도부터 적용하되, 2003학년도 에는 6학기 재학생에 한하여 적용한다.
- ③(다른 규정의 폐지) 이 시행규칙 시행과 동시에 대학원학칙시행규칙과 대학원부전공시수규칙 은 폐지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시행규칙 시행당시 일반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모든 재적생에게 적용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06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07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시행규칙 시행당시 제20조 제2항의 연구등록금은 200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시행규칙 제75조의2(논문제출 시한)는 2009학년도 3월 1일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다. 부	칙			
٥]	시행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	4			
						부	칙			
ो	시행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	a 1			
o]	시행규칙은	2012년	7윜	1일부터		부 다.	칙			
,	101112				, , ,	부	칙			
0]	시행규칙은	2012년	10월] 1일부터		- ,				
رم	시행규칙은	00101 1	2 0]	1이 버 리		부 -]	칙			
١	시행표적은	2013년	3절	1월구디		다. 부	칙			
(ه	시행규칙은	2013년	8월	1일부터		•	·			
						부	칙			
0]	시행규칙은	2013년	10월	l 1일부터		ŀ다. 부	칙			
(ه	시행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	4			
·	, , , , , ,			_ , ,		부	칙			
(ه	시행규칙은	2014년	10월	l 1일부터						
റി	시행규칙은	2015เส้	7위	1이보티		부 다	칙			
٠,	기왕비주단	2010 년	1 包	1279		ᆨ. 부	칙			
(٥	시행규칙은	2015년	11ફ] 1일부터	시행한	난다.				
,		2010.1	2.01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6년	3월	I일무터	시행한`	다. 부	칙			
(ه	시행규칙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하	-	·	l호, 제2항제4	l호 및 제3항 ²	세4호 신
설	에 따른 사형	}은 2010	6학년	도 제2학	기 입호	가부터	적용한다.			
			- 43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다. 부	칙			
(ه	시행규칙은	2017년	11월	l 1일부터		•	•	규정은 2018	3년 3월 1일부	·터 적용
한	다.									
						부	칙			
<u>0</u>]	시행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 51			
o]	시행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부 되. 제6	칙 4조 제1항은	2021년 9월	1일부터 적용	한다.
,	, , , , , ,		_	_ , ,		가. "° 부	칙		_ , , , , , ,	_ ,
0]	시행규칙은	2021년	10월] 1일부터			_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8조 단서는 이 시행규칙의 시행일 (2023.3.1.) 이전에 석사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신설 2020.7.1.)

융합전공 이수학점

0 원 기 교 내	주전공		융합전공		합계			비고		
융합전공명	석사 과정	박사 과정	통합 과정	석사 과정	박사 과정	통합 과정	석사 과정	박사 과정	통합 과정	(주관학과)
글로벌다문화 융합전공	12	18	-	12	18	-	24	36	-	정치외교학과, 디지털미디어학과, 아동학과, 아랍지역학과, 중어중문학과, 청소년지도학과
지능형반도체공학 융합전공	24	36	60	6	9	9	30	45	69	신소재공학과,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화학공학과, 기계공학과, 물리학과

[※] 융합전공 이수를 위한 종합시험 시험과목은 주전공 및 융합전공 교과목 중에서 석사과정은 각 1개 교과목(총 2개 교과목),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은 각 2개 교과목(총 4개 교과목)을 합격하여야 함

[별지 제1호 서식](변경 2008.12.1)

석제 호							
학 위 기							
O O O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우리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과정(학 전공)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하여 ○○학 석사의 자격을 갖 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년 월 일							
명지대학교 대학원장 ○ ○ 박사 ○ ○ ○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〇〇학 석사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명지대학교 총장 ○ ○ 박사 ○ ○ ○ 엔							
학위번호 : <u>명지대</u>							

박제 호					
	학	위	7]		
			O 년	O 월	○ 일생
위 사람은 우리 이수하고 소정의 었으므로 이를 인	시험과 논문심		,		•
논문제목 :					
		년 월	일		
명지	대학교 대학원	장 ○ ○ 박사	. 0 0 0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여 〇〇학 박시	라 학위를 수여	함.	
		년 월	일		
명기	기대학교 총장	○ ○ 박사	000 (ପ	
학위번호 : <u>명지대</u>		_			

비누기	ㅎ
박제	오

학 위 기

위 사람은 우리 대학교 대학원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학 전 공)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하여 ○○학 박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논문제목 :

년 월 일

명지대학교 대학원장 ○ ○ 박사 ○ ○ ○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 박사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명지대학교 총장 ㅇ ㅇ 박사 ㅇ ㅇ ㅇ 엔

학위번호 : 명지대

[별지 제**3호 서식]**(변경 2008.12.1)

명박제 호				
	학	위	7]	
			O 년	○ ○
				공헌을 하였으므로 위 수여를 추천함.
		년 월	일	
명 /	시대학교 대학원	장 0 0 년	박사 ○ ○ ○	Q
위의	추천에 의하여	명예 ○○힉	박사학위를 수여	여함.
		년 월	일	
τ	명지대학교 총장	· ○ ○ 박/	사 0 0 0 인	
학위번호 : <u>명</u> 2	니대			

수 료 증

○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우리 대학교 대학원 ○○ 학과(○○ 전공)에서 ○년간의 연구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를 증명함.

년 월 일

명지대학교 대학원장 ○ ○ 박사 ○ ○ ○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명지대학교 총장 ○ ○ 박사 ○ ○ ○ 인